입 찰 유 의 서

1.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대학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설명 참가

가. 현장설명참가자는 현장설명 종료시까지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시간엄수)

나.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한다.

다. 현장설명참가신청서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고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라. 당해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함.

다. 납부금액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라.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대학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VAT포함) 투찰 업체와 계약 체결

5. 입찰금액 : 입찰 시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세포함한 입찰하여야 한다.

6.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7. 입찰의 무효 :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차. 4번 '가'항 및 '다'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타. 상기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할 수 있다.

8. 입찰의 연기

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1번 '나'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9.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작는 최종 낙찰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라. 본 공고는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쉬로 될 수 있음.

11. 계약의 성립 :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대학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은 잔금 지급 전 정산처리한다.

13.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 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만료일 이후 2개월을 연장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4. 연대보증인

가. 계약상대자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세우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를 해야 한다.

나.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시 참가자격과 동등한 자격자로 한다.

15.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나. 본 공고는 학교 내부사정에 의해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다. 끝.